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11. 11.

지 식 경 제 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우편법」 및 「우편법시행령」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신송달업자의 신고(안 제2조의3)

○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기준 및 이용조건을 정함(안 제12조)

○ 보편적 우편역무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우편물의 수집・배달 횟수, 우편물 송달기간, 이용조건 등 서비스 기준을 정함

다. 보편적 우편역무의 특수취급 처리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 보편적 우편역무의 특수취급우편물 범위 확대에 따른 처리 근거 마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지식경제부령 제　　호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등) ①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서신송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신송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운영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예상사업 수지계산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신고인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3.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③ 서신송달업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사업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신송달업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과 제3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서신송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신송달업 휴업(또는 폐업)신고서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의 본문 중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기본우편역무"를 "보편적 우편역무"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기준 및 이용조건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을 위하여 매 근무일에 1회 이상 우편물을 수집하고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 교통,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우체국 창구에 접수한 우편물의 송달에 걸리는 기간(이하 "우편물 송달기준"이라 한다)은 수집이나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배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집이나 접수한 날이란 우편물의 수집을 관할하는 우체국장이 관할지역의 지리·교통상황·우편물처리능력 및 다른 지역의 우편물송달능력 등을 참작

하여 공고한 시간내에 우체통에 투입되거나 우체국 창구에 접수한 경우를 말한다.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유급휴일·토요일 및 우정사업본부장이 배달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날은 이를 우편물송달기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 및 우체통의 설치현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보편적 우편역무의 특수취급) ①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의한 특수취급은 제25조제1항, 제26조부터 제66조까지, 제70조의10부터 제70조의15까지를 준용한다.

② 보편적 우편역무의 특수취급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③ 보편적 우편역무에 부가할 수 있는 우편역무는 별표 2와 같다.

제15조의2제1항 본문 중 "기본우편역무 및 부가우편역무"를 "보편적 우편역무 및 선택적 우편역무"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영 제1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우편물

제2장제1절제3관(제22조)을 삭제한다.

제2장제2절의 제목 "부가우편역무"를 "선택적 우편역무"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부가우편역무의 종류등"을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으로 하고, 제1항 본문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를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며, 같은 조의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에 부가할 수 있는 우편역무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③ 우편역무의 종류에 따라 부가할 수 있는 우편역무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2장제2절제14관의 제목 “기타 부가우편역무”를 “그 밖의 선택적 우편역무”로 한다.

제83조 제목 및 본문 중 “부가우편역무”를 “우편역무”로 한다.

제85조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영 제1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상품안내서로서 중량과 규격이 같고, 1회 50,000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후납 우편물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은 별지와 같다.

부칙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에 부가할 수 있는 우편역무

(제12조의2제2항 및 제25조제2항 관련)

구 분	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보편적 역무	선택적 역무	보편적 역무	선택적 역무
등기취급	○	○	○	○
통화등기	○	○		
물품등기	○	○		
유가증권등기	○	○		
대금교환			○	○
내용증명	○	○		
접수시각증명	○	○	○	○
배달증명	○	○	○	○
국내특급우편	○	○	○	○
특별송달	○	○		
민원우편	○	○		
모사전송우편		○		
우편주문판매				○
광고우편		○		
전자우편		○		
우편물방문접수		○	○	○
토요일일간신문배달		○		
휴일배달소포			○	○
착불소포			○	○
계약등기	○	○		
회신우편	○	○		
본인지정우편	○	○		
우편주소정보제공	○	○		

[별표 2]

우편역무의 종류에 따라 부가할 수 있는 우편역무

(제12조의2제3항 및 제25조제3항 관련)

구 분	등기	접수시각증명	배달증명	국내특급우편	내용증명	착불배달	회신우편	본인지정배달	우편주소정보제공
등 기 취 급		○	○	○					○
통 화 등 기	○	○	○	○					
물 품 등 기	○	○	○	○					
유 가 증 권 등 기	○	○	○	○					
대 금 교 환	○	○	○	○					
내 용 증 명	○	○	○	○					
접 수 시 각 증 명	○		○	○					
배 달 증 명	○	○		○					
국 내 특 급 우 편	○	○	○						
특 별 송 달	○	○		○					
민 원 우 편	○	○		○					
우 편 자 루 배 달	○	○	○	○					
우 편 주 문 판 매	○	○	○	○					
전 자 우 편	○	○	○	○	○				
우 편 물 방 문 접 수	○	○	○	○					
휴 일 배 달 소 포	○	○	○						
착 불 배 달	○								
계 약 등 기	○		○	○		○	○	○	○

[별표 3]

지연배달 기준 및 배상금액

(제135조의2제4항 관련)

구 분			지연배달 기준	배 상 금 액
통상우편물	등 기 취 급		송달기준보다 2일 이상 지연배달	우편요금 및 등기취급 수수료
	국내특급우편	당일배달	다음날 0시~20시 전까지 배달	국내특급수수료
			다음날 20시 이후 배달	우편요금 및 국내특급수수료
		다음날 오전 배달	다음날 16시 이후 배달	국내특급수수료
			송달기준보다 24시간 이상 지연배달	우편요금 및 국내특급수수료
		다음날 배달	송달기준보다 2일 이상 지연배달	우편요금 및 국내특급수수료
소포우편물	등 기 취 급		송달기준보다 2일 이상 지연배달	우편요금 및 등기취급 수수료
	국내특급우편	당일배달	다음날 0시~20시 전까지 배달	국내특급수수료
			다음날 20시 이후 배달	우편요금 및 국내특급수수료
		다음날 오전 배달	다음날 16시 이후 배달	국내특급수수료
			송달기준보다 24시간 이상 지연배달	우편요금 및 국내특급수수료

비 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연배달의 예외로 한다.

1. 설, 추석 등에 우편물이 대량으로 늘어나 지연배달 되는 경우
2. 우편번호를 잘못 기재하거나 수취인이 부재하는 등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배달 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배달 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서신송달업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 성 명 (상 호 또는 대표자명)		②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③주 소 (본점 또는 주된사무소)	우편번호 : (–) 주소 : 전화 : E-mail :		
④ 사업내용				
⑤ 변경내용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우편법」 제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서신송달업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우정사업본부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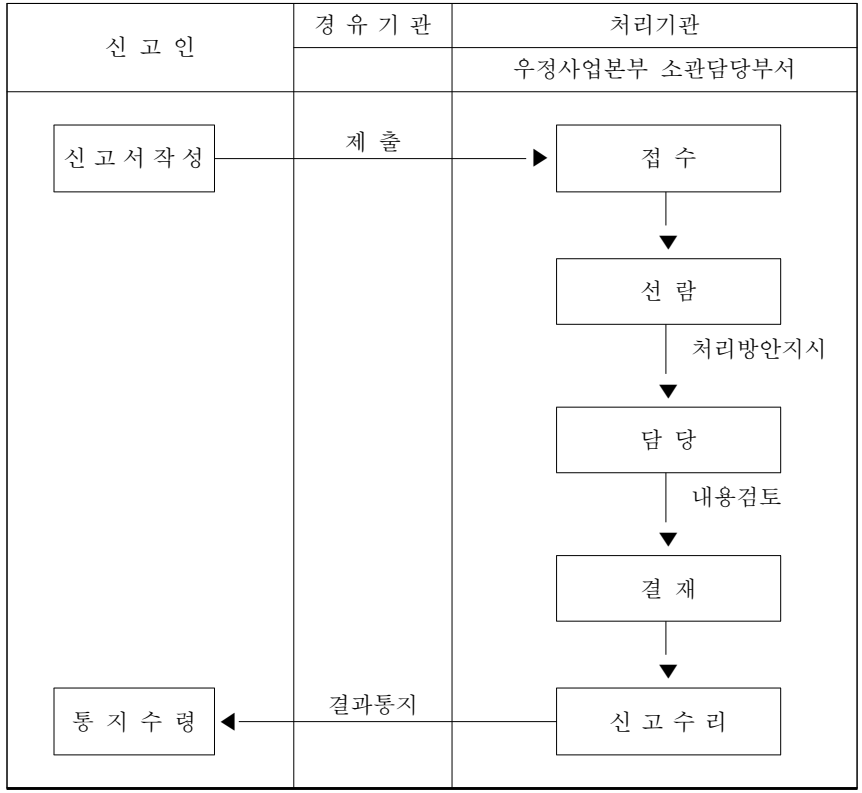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확인사항
	최초 신고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2. 예상사업 수지계산서 1부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3.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변경 신고의 경우	사업계획변경내용 1부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3.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별지 제2호 서식]

서신송달업 신고대장

신고 번호	신고수리일	상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신고구분 (최초/변경)	주요사업계획(변경)내용

364mm×257mm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3호 서식]

신고 제 호

서신송달업 (변경)신고필증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사업범위

위의 업체는 우편법 제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서신송달업의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우정사업본부장 [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4호 서식] (앞 면)

서신송달업 휴업(사업폐지) 신고서				처리기간
				2일
신청(신고)인	①성명(상호 또는 대표자명)		②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③주 소 (본점 또는 주된사무소)	(전화번호 :)		
휴업 또는 사업폐지 내용	④사업의 범위			
	⑤휴 업 예 정 기 간	. . 부터 . . 까지 (년 월)		
	⑥사 업 폐 지 일 자			
⑦휴 업 또 는 폐 지 사 유				

「우편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5항에 따라 서신송달업의 휴업(사업폐지)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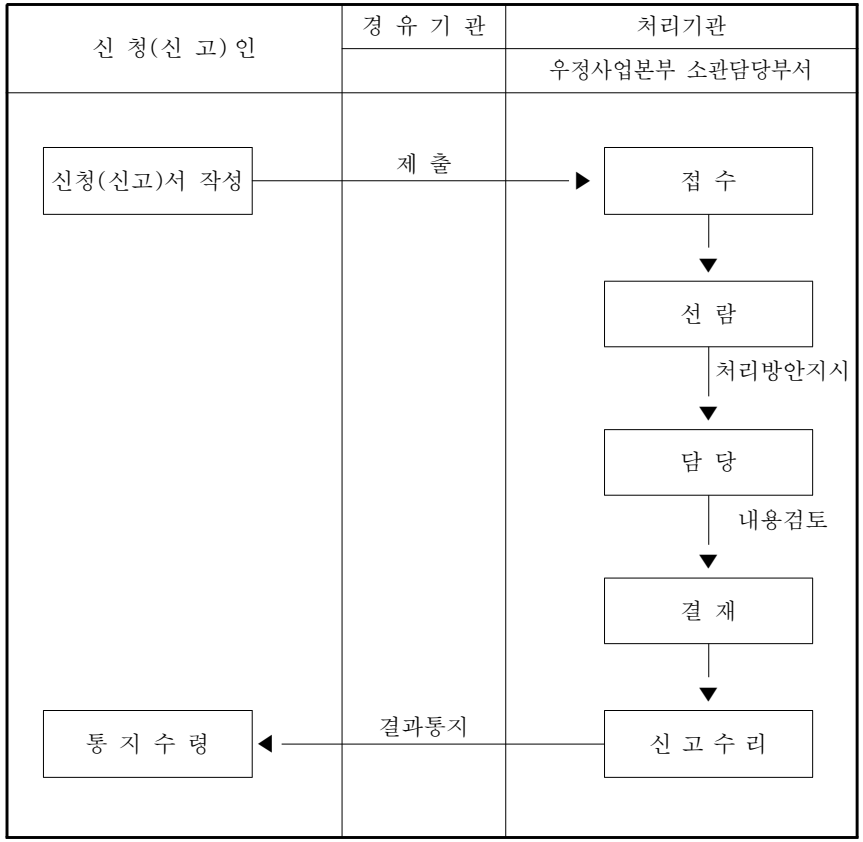
우정사업본부장 귀하

첨부서류 :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297㎜

(신문용지 54g/㎡)

이 신청(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3(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등) ①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서신송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신송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운영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예상사업 수지계산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신고인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3.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③ 서신송달업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사업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신송달업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과 제3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서신송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신송달업 휴업(또는 폐업)신고서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손실보상등의 청구) ①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우편운송등의 조력자에 대한 보수와 법 제5조에 따른 우편운송원등의 통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제7조 (손실보상등의 청구) ① 법 ---------- ---------- ---------- ---------- ----------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그 우편운송원등이 소속된 우체국장을 거쳐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장 우편역무	제2장 우편역무
제1절 기본우편역무	제1절 보편적 우편역무
제1관 통칙	제1관 통칙
제12조(기본우편역무의 종류)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우편역무의 종류는 우편물의 송달에 소요되는 기간(이하 "우편물송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삭제 2. 보통우편물 :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3일이내에 배달하는 우편물	제12조(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기준 및 이용조건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을 위하여 매 근무일에 1회 이상 우편물을 수집하고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 교통,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 각호의 우편물송달기준은 우편물의 수집을 관할하는 우체국장이 관할지역의 지리·교통상황·우편물처리능력 및 다른 지역의 우편물송달능력등을 참작하여 공고한 시간내에 우체통에 투입되거나 우체국 창구에 접수된 우편물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우체국 창구에 접수한 우편물의 송달에 걸리는 기간(이하 “우편물 송달기준”이라 한다)은 수집이나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배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집이나 접수한 날이란 우편물의 수집을 관할하는 우체국장이 관할지역의 지리·교통상황·우편물처리능력 및 다른 지역의 우편물송달능력 등을 참작하여 공고한 시간내에 우체통에 투입되거나 우체국 창구에 접수한 경우를 말한다.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유급휴일·토요일 및 우정사업본부장이 배달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날은 이를 우편물송달기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유급휴일·토요일 및 우정사업본부장이 배달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날은 이를 우편물송달기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 및 우체통의 설치현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2(보편적 우편역무의 특수취급) ①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의한 특수취급은 제25조제1항, 제26조부터 제66조까지, 제70조의10부터 제70조의15까

	지를 준용한다. ② 보편적 우편역무의 특수취급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③ 보편적 우편역무에 부가할 수 있는 우편역무는 별표 2와 같다.
제15조의2(이용자에 대한 실비의 지급) ①우편관서의 장은 기본 우편역무 및 부가우편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공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당 이용자에게 교통비 등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의2(이용자에 대한 실비의 지급) ① ---------- 보편적 우편역무 및 선택적 우편역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통상우편물의 봉함·규격 등) ①통상우편물은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발송하여야 하며, 봉함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한 우편물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 발송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통상우편물의 봉함·규격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영 제1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우편물
2. ~ 4. (생 략)	3. ~ 5. (현행 2 ~ 4호와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관 소포우편물	<삭 제>
제22조(신서를 함께 넣은 소포우편물) ①소포우편물에는 신서를 함께 넣을 수 있다. ②신서를 함께 넣은 소포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신서를 함께 넣었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신서를 함께 넣은 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은 당해 소포우편요금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따로 고시한 금액을 가산한다.	<삭 제>
제2절 부가우편역무	제2절 선택적 우편역무
제1관 통칙	제1관 통칙
제25조(부가우편역무의 종류등)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②기본우편역무의 종류에 따라 부가할 수 있는 부가우편역무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에 부가할 수 있는 우편역무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③부가우편역무의 종류에 따라 부가할 수 있는 부가우편역무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③ 우편역무의 종류에 따라 부가할 수 있는 우편역무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14관 기타 부가우편역무	제14관 그 밖의 선택적 우편역무
제83조(부가우편역무수수료의 부가)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우편역무에 다른 부가우편역무를 부가한 경우에는 그 부가한 부가우편역무의 수수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83조(우편역무수수료의 부가) ---------- -- 우편역무에 다른 우편역무-- ---------- ---------- 우편역무---------- ----------.
제85조(우편요금등의 감액대상우편물) 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9조에 따른 요금등(이하 "우편요금등"이라 한다)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제85조(우편요금등의 감액대상우편물) ---------- ---------- ---------- ---------- ---------- -.
1. 통상우편물	1. 통상우편물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영 제1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상품안내서로서 중량과 규격이 같고, 1회 50,000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후납 우편물
2. 소포우편물	2. 소포우편물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팀	
연 락 처	(02) 2195-1212